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7. 18.(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건 (2018-37-393)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와 제54조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사항입니다. 2018년 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5월에는 저희가 고시 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익채널 선정 신청자격에 관한 기본 사항과 제출 서류 안내, 제출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방법과 보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인정된 채널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운영 계획서상에 제시한 사업계획의 불성실 이행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기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선·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선·인정 심사에 비계량 심사 항목이 많아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인정 사업자의 사업계획 대비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줄이고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하였고,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항목과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을 일치시키고 이행실적 심사 시 기존 선정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획 대비 실적달성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부과하여 환류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항목의 계량 비율을 10%에서 36%로 상향하였습니다. 선정심사 방법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정심사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심사, 의견 청취, 현장 실사를 통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통위는 공익 채널 운영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정조건을 부가하고 선정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공익채널 선정심사 시 반영하도록 했고, 선정 사업자에 대해 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하되, 실적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평가기관의 장이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익채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의 인정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서류의 공개, 필요사항 공고, 규제의 재검토 관련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선정심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공익채널 실적평가기관의 지정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 서류 공개 시 정보공개법을 준용하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고, 기타 중복규정 사항 삭제 요청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자 건의사항으로 장애인복지채널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욱 부위원장

- 보고된 안건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심사항목의 계량비율을 높여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에 따라 가점이나 감점을 부과해서 정책의 피드백, 즉 환류체계를 보다 강화한 것은 일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장애인복지채널에 대해서도 공익채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기로 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보고된 안건에 동의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싸하게 이행계획을 잘 꾸미기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심사는 당연히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행했느냐, 이행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 하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의 적정성 배점은 줄이는 대신에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 얼마나 잘 이행했느냐 하는 점수를 더 많이 배점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종전에는 어땠고 앞으로 개선되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몇 대 몇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주 많은 변화는 아니었고 심사한 항목 중에서 계획의 적정성 배점이 300점이던 것을 240점으로 줄이고 60점 부분을 이행실적 쪽으로 올려서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이 300점에서 360점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만 해도 일단 계획보다는 이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게 우리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채널은 선정이 아니라 인정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장애인복지채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특별한 공익채널 선정기준을 준용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기본 계획 정도에 그쳤던 것을 고시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복지TV가 인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은, 지금은 1년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현재는 1년이고, 올해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올해부터는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올해부터는 2년으로 우리가 고시에 명시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시행령에서 개정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행령에서 결정을 했지요. 현재는 2년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인지는 나중에 실적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영향평가라는 것이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새로 도입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법령 개정 시에는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배점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구체적인 배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심사를 실시해서 부패방지과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있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해당 부처에서 수용해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공익채널 실적평가기관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익채널 실적을 평가하는데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산이 2억원 정도 있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떻습니까? 재단에서는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청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공익채널 실적을 평가해야 할 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사업자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현재 인력이나 예산으로는 무리가 없습니까? 재단에서 뭐라고 고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현재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 수준은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설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산은 예년처럼 그 규모에서 계속 배정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2억 3,000만원 정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안건 보고를 계기로 원론적인 부분들 2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사항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또 처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늘 경청하고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입장이 있는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는 그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쉽지요. 계량 심사를 할 때 계량평가 비중을 높이고 비계량평가를 낮춰라, 그것이 심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 부분을 보면 계량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방송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평가의 계량평가로 되어 있는 척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전부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방송평가 제도 개선, 특히 거기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그 내용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과도하게 계량평가가 낮은 부분들은 개선해서 높여야겠지만 그렇다고 계량평가를 예를 들어 과반 이상으로 한다, 이것이 정확한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비계량평가의 객관성·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고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사업자, 그리고 결과가 좋은 평가로 판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계량평가를 일부러 안 되는데 그것을 계량화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심사척도 중 비계량 평가의 척도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제4기 방통위가 출범한 뒤로 심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법정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문성 외에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 이 부분은 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젊은 이용자들, 젊은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 위촉 시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라는 것 외에 세대별 그리고 지역별 대표성 이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송정책국 소관뿐만 아니라 방송기반국이나 이용자정책국 그리고 기획조정관 쪽 모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배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공익채널은 그래도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복지채널의 경우에는 그것이 딱 하나라서, 그렇다고 이런 기준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적절히 잘 조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지채널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시청하고 있고 장애인들 가운데에서 그 복지채널이 차지하는 방송으로서의 비중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전체적인 시청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시청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장애인들이 얼마나 보고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업자가 딱 하나라서 또 너무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에 그나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완화해서 적절하게 적당히 봐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다른 공익채널의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있어서 서로 잘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복지채널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감독을 더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김석진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붙임>의 변경 전과 변경 후 선정 심사기준 개선(안) <표>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계획보다는 이행실적 평가에 더 배점을 많이 준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의 적정성에서 전문편성에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을 현재는 배점에 공익채널이나 장애인채널에서 150점, 170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절반 이하로 많이 낮추어서 80점으로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신에 본방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50점에서 각각 80점으로 올렸습니다. 이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잠깐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전문편성 제작은 많이 지키고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공익채널의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재방이 아주 많고 제작이나 수급 측면에서 본방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방 프로그램 비율을 일부 약간 조정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공정성·공익성 항목에 있어서 채널의 과거 운영실적을 뭉뚱그려서 250점 배점을 줬는데 이것을 다 세분화해서 각각 100점씩을 했습니다. 전문편성, 본방 편성실적, 또 수급 실적 이렇게 이것을 나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은 운영계획의 적정성 부분을 평가할 때 기존에도 전문편성, 그다음에 수급계획, 본방 비율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과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은 일치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18-37-394)**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2017년도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교환율은 1:0.38로 하며, 2017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경과사항은 생략하고,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정방법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등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일간신문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영비율입니다.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100% 반영하여 합산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 비율만큼 곱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일간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100% 반영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유 비율만큼 곱하여 합산합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매체교환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조사와 시장 조사를 통해 2017년도 매체교환율을 측정한 결과, 일간신문의 방송 대비 영향력은 0.3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용자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하여 TV·신문을 통한 시사정보 이용률, 이용시간, 매체의존도 등 3가지 측정비율 값을 산술평균하였으며, 시장조사는 텔레비전 방송매출과 일간신문의 광고매출 자료로 산정하며, 시장에서의 TV와 신문 영향력 차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도 TV·신문 이용행태 조사와 광고매출 조사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산대상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3개 일간신문이 환산대상입니다. 환산방법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매체교환율을 곱하여 환산된 시청률을 구한 후 이를 2017년도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의 합(26.135)로 나누어 일간신문구독률의 환산 시청점유율을 구하였습니다. 환산결과입니다. 일간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을 환산한 결과, 조선일보 계열이 6.398%, 중앙일보 계열이 3.425%, 동아일보 계열이 3.241%, 매일경제 계열이 1.20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입니다. 먼저 산정 대상 및 기간입니다. 텔

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271개 방송사업자의 397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산정 대상이고, 산정 대상기간은 2017년 1월 11일부터 1년인 12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주요 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26.890%, (주)문화방송 12.465%, (주)에스비에스 8.661%, 한국교육방송공사 2.180%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 PP의 시청점유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이티비씨 9.453%, (주)조선방송 8.886%, (주)채널에이 6.056%, (주)매일방송 5.215%, (주)와이티엔 2.492%, (주)연합뉴스티브이 2.187%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과 종편PP 및 보도PP 시청점유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SO계열PP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제이이엔엠주식회사 11.000%, (주)티캐스트 2.970%, (주)아이에이치큐 1.589%, (주)현대미디어 0.832%, (주)씨엠비홀딩스 0.106%,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1.257%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적용에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2017년도 매출교환율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점유율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률로 환산해서 방송 시청률과 합산한 표현을 ‘시청점유율’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이것을 다 방송의 시청점유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부 방송사들이 자기들의 시청점유율이 신문과 합산한 것을 높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TV의 실제 시청점유율 같이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오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적절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 개정할 때 어떻게 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이 표현은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이 일반 텔레비전 시청과 일간신문 구독률을 합산해서 내는데 실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모바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고려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문과 합쳤을 때 시청점유율이라는 것이 정말 일반인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 경우이고, 모바일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정형TV 시청점유율과 합해서 논의할 것인가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점유율 용어와 관련해서는 도입 취지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는 신문방송 겸영사업자가 방송에 참여해서 신문방송 겸영사업자가 과도한 여론 형성력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이기 때문에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획득한 시청점유율과 환산된 구독률이 합쳐지면 특정 사업자가 방송에서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를 공개할 때 방송사업자 본인이 획득한 시청점유율과 특수관계자가 획득한 시청점유율 그리고 신문에서 환산된 시청점유율을 별도로 표기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바일 쪽에서 소비되고 있는 내지는 이용되고 있는 방송의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부분은 N-스크린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 1년 동안 모바일에서 방송된 내용을 다 취합해서 분석 중이고 8월 중에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리려는 고정형 시청점유율에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된 결과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모바일 쪽과 고정형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시청점유율을 공개하는 제도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참관하시는 기자님들께서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차이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독자들 또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자 조사할 때 시사정보 이용률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는 것입니까? 시사정보 이용률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조사에서는 시사정보 이용률과 이용시간, 매체 의존도를 조사하는데 각각 정의를 내리기에 따라서는 설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시사정보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정보를 저희가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사정보 이용률은 설문문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지난 일주일 간 일간신문을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지는 ‘TV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인데 시사정보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포괄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사정보 이용시간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몇 번 신문 읽었느냐, 내지는 방송을 보셨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방대한 조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건의 <붙임>자료에서 분석했듯이 지상파 3사를 합친 시청점유율은 2015년 53.4%에서부터 2017년 40%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일간신문을 겸영하고 있는 종편PP 4개사의 시청점유율은 최근 3년간 29.4에서 29.6%로 16개 채널 전체입니다만 CJ E&M은 10.6%에서 11%로 안정적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

점유율의 변화는 첫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PP 재허가 때 조건 부여를 통해서 자체제작을 독려한 점, 그리고 둘째로는 CJ E&M 등이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프로그램 제작 경쟁이 활성화됐고, 이로 인해 지상파 외에도 다양한 방송 콘텐츠가 출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방송 플랫폼이 다변화되었지만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또한 이로 인해 시청점유율 상승과 방송광고 매출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보고된 안전에 보면 JTBC의 약진입니다. 2017년 조사에서 그동안 종편PP사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전체 시청점유율은 TV조선이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방송 겸영 종편PP의 경우에 TV 시청점유율에 신문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인 TV 본인의 영향력보다 신문구독률의 우열에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부풀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결과를 보면 JTBC가 전체 시청점유율 9.4%로 종편PP 4개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문구독률을 환산한 점유율을 보면 TV조선이 6.398%, JTBC가 3.425%로 신문영향력은 조선일보 계열이 여전히 높았지만 TV 본인만의 시청점유율은 JTBC가 5.039%로 2.488%를 점유한 TV조선보다 높아서 신문구독률을 상쇄하고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영향력이 크더라도 결국은 방송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시장의 영향력도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JTBC의 약진은 결과적으로 제작진의 노력과 더불어서 경영진의 과감한 제작투자의 의지와 그 집행실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재산상황공표집을 보면 JTBC가 제작비와 구매를 합한 프로그램 비용으로 최근 3년간 5,92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방송콘텐츠 투자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결과적으로 2017년 시청점유율 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까 표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 국회에서도 여전히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과 관련해서 효율성이 낮은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VOD를 통한 TV 시청이 늘어나는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TV 프로그램을 보는 경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춘 새로운 산정방식은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 10월까지 연간 통합 시청점유율을 산정하는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저희가 오늘 고정형TV 시청점유율을 의결하고 지금 N-스크린 시청기록은 검증작업을 계속 해서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값이 나오면 합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10월까지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도입할 통합시청점유율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허 욱 부위원장

- 오늘 안전에 관련된 제반 사안들이 개별 종편PP나 아니면 지상파 개개인의 시청점유율 정도가 아니라 추세, 흐름들을 <표>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브리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통합시청점유율 산정 작업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앞서 두 분이서 또 위원장님도 시청점유율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률과 합산한 종합 수치와 순위에만 언론들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거두절미하고 순위만 매겨서 ‘우리가 1등 했니’ 이런 데 이용되면 조금 역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혹시나 또 시장을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표>를 보니까 특이할만한 것은 여전히 지상파의 합산 시청점유율은 떨어지고 있고 종편들의 약진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위원장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만 역시 콘텐츠 투자가 그만큼 시청점유율을 끌어 올렸다 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방송사들이 더욱 콘텐츠 투자에 더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TV조선과 JTBC 같은 경우 예를 들면 JTBC가 올해 처음으로 TV조선보다도 시청점유율이 앞서는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TV조선이 작년에는 9.8%였는데 JTBC는 7.7%에서 9.4%로 상당한 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편들에게도 그 비결이 뭔지, 역시 콘텐츠 투자를 끌어올린다 하는 부분들을 아마 인식하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 CJ E&M이 지난 3년간 시청점유율이 10%를 꼭 상회하다가 작년에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지상파인 문화방송에 육박하는 수치이고, SBS보다도 약 3% 정도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CJ E&M은 일종의 PP에 불과한데 지상파나 종합편성PP처럼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재방, 삼방, 사방까지 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또 광고도 다 독식해 가는 현상이고, 이것을 타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드니까 많이 보게 되고 또 광고도 많이 붙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J E&M이 지상파 SBS보다도 광고 매출액이 더 크고, 또 시청점유율도 상당히 앞서는 이런 현상이 3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방송정책은 여기에 과연 대응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방송발전기금도 내지 않고 있고 또 수익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든 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연구할 때가 됐다, 검토할 때가 됐다 이것이 작년만의 현상이 아니고 꾸준히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송정책을 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김석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원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점유율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는 목표가 무엇이지요?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제도 도입 취지와 마찬가지로 특정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여론 형성력을 제한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방송법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하는 목적도 거기에 부합되는데, 다만 지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점유율이 공개됨에 따라 마치 방송사업자 간에 성과를 경쟁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종편 허가에 맞춰서 시청점유율, 즉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측정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시청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초과할 경우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그것을 분산시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 이미 지상파의 독과점적인 구조는 끝났다, 그러한 시장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한 이래 100분의 30을 초과한 사업자는 초기에 KBS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 뒤로 KBS도 30% 초과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KBS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0%를 초과하였으나 법에서는 국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분의 30을 초과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년간에 걸친 트렌드를 보면 지상파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종편계열 그리고 유료방송 중에서 CJ계열은 약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점유율이 지상파들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사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MBC 4.53%이고 SBS 5.31%입니다. 지금 JTBC가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5.03%, CJ는 본인만 9.92%입니다. 이미 압도했습니다. 지상파에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규제정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적책무나 재원 문제, 광고정책이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문제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방송정책을 하셨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말씀하신 대로 원래 도입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방통위가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광고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따라서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책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지상파가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지상파에 부과했던 공적책무나 현재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가 붕괴된 상태에서의 공적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편이나 유료방송의 점유율은 몰라보게 도약을 했습니다만 공적책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즉, 규제 차별성 문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업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 공영방송으로 또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타 지상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 지상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유료방송 중에서 특히 CJ계열 같은 경우 시청점유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공적책무 부가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탈기금 부과율을 높인 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잠깐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청점유율이나 시청률이나 신문의 구독률, 열독률은 결국은 매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로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나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적인 책무를 부여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매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30% 넘는다고 이제는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과 함께 이것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원래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률로 환산해서 시청점유율을 계산하는 목적은 신문사들이 방송에 진출하면서 신문의 영향력과 방송에서의 영향력을 합쳐서 너무 과도하게 될까 봐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어느 일정한 선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 방송계의 현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연구가 되어서 우리 방송사들의 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상파방송의 하락이고, 종편의 부상, 또 오락채널 tvN의 상당한 부상인데 이런 것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의의는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사 간 본인 시청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추적하는 것이 그리고 그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조사를 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방송의 시청행태가 실시간방송에서 VOD로 바뀌기 때문에 VOD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 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 시청점유율로 변화가 보여주는 바대로 우리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상파라고 해서 옛날과 같은 지상파가 아닌 것 같고, PP라고 해서 옛날과 같은 PP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점유율 연구가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함의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취지는 별도 규제를 신설하자거나 강화하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대신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로 나온 매체별 점유율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여론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 사업자의 위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걸맞도록 현재 차별규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산정방식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대입해야 할 경우의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는 학계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회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게 산정해서, 171개입니까? 전체를 다 계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특별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만들어졌는데 어디까지 배포가 됩니까? 국회도서관에서는 다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시청점유율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개를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원래 도입 취지는 과도한 여론 형성력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방송사업자의 시장에서 위치, 이용자 측면에서의 성과나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10%를 상회하면 시청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하자는 법안도 마련되어 있듯이 이 데이터는 규제데이터로 도입됐지만 정책데이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광고주들이 굉장히 이 자료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시청점유율이 곧 매체영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광고주들도 쉽게 접근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도 순수외주제작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17년도 국정과제와 금년 주요업무계획에 관련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개정이 되겠습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으로서는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없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PP의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관계부처 의견조치를 7월에 마치고 입법예고 및 위원회 의결 그리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실제로 종편들의 외주제작 상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종편이 현재 작년 기준했을 때 최저 43%에서 53%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제안을 마련하나마나 아십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이럴 때는 실제 종편사별로 외주를 얼마씩 주고 있는지를 첨부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것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것을 부과한다고 해서 종편들에게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담이 없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외주제작 편성비율로 보면 지상파의 외주제작 편성 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의견 주시지요.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올해 국정과제와 주요 업무계획에서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이제는 전체적인 타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에 나왔듯이 외주제작의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종편에 대한 의무 송출 제도 개선하는 것, 셋째로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기준과 징수율 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 3가지가 주요의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종편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신설되는 것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외주제작사를 활용한 제작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어서 규제 신설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것이 규제 신설 강화가 아니냐는 이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규개위에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인 수치들을 제시하면 위원들도 충분히 납득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종편들이 외주제작 편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 규제 자체를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파는 우리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가 안건을 처리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시청점유율 측면에서도 매체 영향력 측면에서도 종편들의 급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상파와 맞먹는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하나 지상파와의 여러 가지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용어에 순수외주제작 편성인데 '순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15년도에 특수관계자 편성비율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고, 자회사를 뺀 순수하게 독립제작사에게 외주제작을 의뢰한 부분을 일컬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상파 KBS2 같은 경우 35%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MBC, SBS는 32%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후년부터 30% 이상으로 조금 낮춰 준다는 뜻입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우리가 제시할 종편에 대한 편성규제는 수치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현재도 시행령에서는 35% 이내에서 별도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외주제작사, 독립제작사의 제작물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지상파방송이나 종편이라는 이런 거대방송사들이 소위 갑질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감독을 해야 할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이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제작사에 많은 방송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위 갑과 을로서 갑질에 대한 횡포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주제작사 노조가 결성되어서 권익을 지켜 나가자고 요즘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외주제작 편성규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도 주요업무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갑질 횡포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단속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를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20년부터 MBC, SBS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낮추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EBS는 16%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2가지 여쭙보겠습니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현재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은 '16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시가 되면서 '17년도까지는 KBS1, MBC, SBS가 35%였고, 그리고 '18년, '19년도에 32%, '20년도부터는 30%로 당시 '16년도 10월에 편성고시를 할 때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정해진 이유는 특수관계자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년 이전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이 지금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새롭게 고시하면서 최소한 '16년도 이전 순수외주제작비율보다 전체적으로 더 높게 책정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EBS 같은 경우 이 기준이 적절합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EBS 같은 경우에도 교육채널의 특수성 때문에 당시에 16%로 고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떨어뜨리면 독립제작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진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같이 병합해서 봐야 하는 사항 아닌가, 물론 2016년도에 그와 같이 순차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병합해서 봐야지 이것을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EBS 같은 경우 '16년도에 특수관계자에 있을 때가 전체 20%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가 4.2%였기 때문에 당시에 순수외주제작이 15.8%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6%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무래도 이것이 제3기 때 결정된 부분이라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조정하면서 어떤 전제가 있었습니다. 방송법 개정 사안이었구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외주제작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문화부에서는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들의 입장을 들어서 중장기 계획이나 제작요소들 확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판단했나 하면 양적인 비율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때 당시에 외주제작사와 지상파들 간 계약서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것들을 지상파들이 외주제작사와 사용하기로 하고 또 그 내용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즉,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인 개선을 전제로 해서 순수외주제작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범정부적으로 발표했던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의 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주제작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공정한 거래 질서 그리고 스태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제작환경 확보 이런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외주제작 의무화를 한 것은 외주제작 산업을 방금 고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콘텐츠 제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외주제작 비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주제작자에게 충분한 제작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사들이 해 온 방식을 보면 제작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저작권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인하우스 제작단가와 외주제작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큰 제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되고 어떻게 보면 외주제작사를 통해 지상파가 할 수 없는 PPL이나 간접광고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땅치가 않고 본래의 외주제작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에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과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정해서 지키도록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작비가 제대로 가는지, 여기에 갑을관계가 없는지 이것을 잘 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BBC를 방문했을 때 BBC에서는 최근에 외주제작 관계 자체프로그램 제작과 외주제작과의 관계를 완전히 개편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일종의 외주제작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래서 BBC 제작진도 자기 프로그램을 비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이 되면 자기 프로그램을 자기가 제작하게 되는데 비딩해서 입찰에서 지면 모든 프로그램이 외주제작사에게 다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BBC의 제작팀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인하우스로 무조건 BBC 제작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나? BBC 인하우스 제작비나 외주 주는 제작비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외주제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방송사들에게 모든 이런 제도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하우스 제작비와 외주제작비 간 차이가 없거나 근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주제작 비율을 정하고 외주제작비율을 따르게 하는 것 못지않게 인하우스 제작비와 외주제작비의 차이가 없도록 감독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이것을 특별히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위원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제작비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방송사들이 순수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비를 그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형태의 외주제작 중에는 협찬 외주제작이 있습니다. 외주제작사가 아예 협찬을 자치단체나 곳곳에서 받아와서 제작하는 경우에 지금 지상파 3사만 하더라도 그것을 별도로 떼어가는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상파 3사 중에서 어떤 특정사를 외주제작사들이 선호를 합니다. 특정 사가 비율을 적게 떼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성도 곳곳에 있다, 실제 외주제작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이번 제4기 방통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이런 식으로 방치되면 대형 외국사업자로 다 가버립니다. 제작사들이 대형 외국사업자나 뭔가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 외주제작으로 만들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업무가 기반국이 맞습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처장님께 여쭙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반을 빨리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 관행 개선 또 제작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나눠먹는 비율이 어떤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반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됐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지책과장

- 현재 고삼석 위원님께서 반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불공정 외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부처 간 그에 따른 이행점검을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제작비와 저작권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3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작년에 아프리카로 촬영 갔다가 사고로 사망하신 박환성·김광일 PD 두 분의 1주년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사건 이후에도 외주제작 시장에서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즈음에 제가 어디 방송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상파방송사 중 한 곳에서 근로시간을 무제한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잠도 못 자고 촬영 끝나고 한밤중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또 새벽에 나가고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해당 지상파방송사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 해당 방송사에서는 점검해서 제작본부 차원에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점검한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평가를 한다면 남은 반년 동안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외주제작의 관행들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방송사에서 시정하려고 해도 그런 불공정 관행들이 조직에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태프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관행들도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시행의 점검 반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 하반기에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계속 저희 제4기 임기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특히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더 잘 챙겨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자들을 만들 때마다 그런 당부를 해 주신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방송기반국이 정말 더 분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4기 위원회가 특히 방송에서 갑을관계의 청산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현장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식의 반응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5개 부처 합동대책까지 내놓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뭔가 더욱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송기반국이 더 분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7분 폐회 】